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1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10월 17일
발 의 자 : 한 신 의원(1명)
찬 성 자 : 경기문, 김기덕, 김성준, 김용일,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승진, 박영한, 박칠성, 서준오, 유정인, 이영실, 이종태, 임만균, 홍국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재난관련 분야 자치법규 개정권고에 따라 소방 현장지휘관의 책무와 지휘활동 사항에 사고·재난 현장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내용을 추가하여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지휘관의 책무에 사고·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내용을 추가함. (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현장지휘관의 지휘활동 사항에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현장지휘관은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 ② (생략)	제4조(현장지휘관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현장지휘관은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현장지휘) ① 현장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휘한다. 1. ~ 6. (생략)	제5조(현장지휘) ①----------.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